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3월 20일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3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 4. 3.)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홍섭 해양산업과장)

가. 개정이유

- 신설된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및 방석요트계류장의 계류 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계류시설 등의 전대금지 규정 삭제(안 제9조)
- 사용료 감면 대상 정비(안 제18조)
 - (현행)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소속 시민
 - (개정)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소속 시민
- 연체료 및 변상금 부과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
-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방석요트계류장 명칭 및 위치 추가 (안 별표 1)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장준호)

-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형산강마리나계류장, 여남요트계류장 및 방석요트계류장의 계류시설 및 마리나 기반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레저 신규 시설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레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남요트계류장(2019년), 방석요트계류장(2021년), 형산강마리나계류장(2024년) 등 신규 계류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그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어 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여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 제고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